

大田直轄市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案

審議 番號	477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4. 10.

提出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自動車の急速한 増加로 우리市の 交通問題가 深化되고 있고, 앞으로 西南部圈開發, 都市鐵道建設, 新交通手段開發의 必要性, 駐車難 등 專門的인 研究, 檢討가 山積해 있으나 交通에 대한 專門要員이 없어 能動的으로 解消해 나가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- 가. 交通專門研究室 設置 運營 (案 第1條, 第21條)
- 나. 3人以內的 地方專門職 公務員 採用(案 第31條)
- 다. 交通問題의 解決을 위한 交通政策開發 및 T.S.M事業 등 支援
(案 第41條, 第51條)

3. 參考事項

- 가. 서울特別市：交通管理事業所 設置 (市 12名, 自治區 44名)
- 나. 釜山, 仁川, 大邱, 光州：條例制定 推進中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 (안)
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대전직할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,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교통전문연구실(이하 “연구실”이라 한다)을 두고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연구실은 교통관광국내에 둔다

제3조(구성) ①연구실은 3인이내의 지방전문직공무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교통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.

제4조(연구원의 직무) 연구원은 대전직할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유업무

- 가. 중·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
- 나. 분야별 교통정책연구
- 다. 교통체계개선(T.S.M)연구
- 라.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
- 마. 교통안전대책연구

2. 지원업무

- 가.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
- 나.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
- 다.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
- 라. 실과 협조요구 업무

3. 기타업무

- 가. 조사·연구토록 지시된 사항
- 나. 현안업무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

제5조(지원) ①교통관광국장은 연구·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
과 장비 및 인력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관계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조사·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용) 연구원의 채용계약, 채용계약의 변경·연장 또는 해지, 복무 및 보수결정
사항 등은 대전직할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제7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大田直轄市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案에 對한 修正(案)

審 議 番 號	477
--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4. 12.

提 出 者：大田直轄市長

1. 修 正 理 由

大田直轄市 交通專門研究室을 1995年 1月 1日부터 設置運營할 計劃였으나, 다소 늦추어 신축적으로 施行코자 大田直轄市 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施行을 “公布한 날부터 施行”하도록 修正하고자 하는 것임

2. 主 要 骨 子

大田直轄市 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기로 함
(부칙)

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안) 부칙중 “1995년 1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부터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당 초 안	수 정 안
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에 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大 田 直 轄 市
交 通 專 門 研 究 室 運 營 條 例 制 定
(審 議 補 助 資 料)

交 通 企 劃 課

1. 條例案 主要內譯

- 조례 제정 목적
 -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정책개발 및 연구, 교통종합정보 관리체제 구축

- 연구실 구성
 - 3인 이내의 지방전문직 공무원
 - 사무보조원(1~2명)

- 연구원의 직무
 - 1) 고유업무
 - 가. 중·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
 - 나. 분야별 교통정책연구
 - 다. 교통체계개선(T.S.M)연구
 - 라.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
 - 마. 교통안전대책 연구

 - 2) 지원업무
 - 가. 교통영향평가 서전 검토
 - 나.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
 - 다.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
 - 라. 실과 협조요구 업무

 - 3) 기타 업무
 - 가. 조사·연구토록 지시된 사항
 - 나. 현안업무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

2. 交通專門研究室 運營計劃

- 조례제정 : '94. 12월
- 조례공포 : '95. 1월
- 운영예산확보 : '95. 3월 예정 (1회추경)
 - 인건비, 운영비 등 : 100,000천원
- 직원채용 : '95. 5월
- 업무개시 : '95. 7월

3. 기타 참고자료

-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(대통령령)
- 대전직할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
-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
- 학력·자격·경력 인정기준(안)

第10組 地方自治 第3項 地方公務員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

●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1 9 8 7 · 1 0 · 1 0
대통령령제12253호전문개정

개정 1991 · 2 · 1 대통령령제13282호(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
1991 · 6 · 27 대통령령제13402호(지방공무원임용령)
1991 · 12 · 31 대통령령제13532호(지방공무원임용령)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2 조제 4 항의 규정
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·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방전문직공무원의 구분) 지방전문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공무원
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제3조 (채용자격)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기
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제4조 (채용결격사유)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
채용될 수 없다.

제5조 (채용절차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직할시·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
이와 같다)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
수 있다. <개정 91·6·27>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
요성,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·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 또
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필
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에
관한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91·2·1, 91·6·27>

제6조 (채용기간) ①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
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
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
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
제 5 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 (채용계약의 해지) 채용기관의 장은 지방전문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
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
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

第10組 地方自治 第3項 地方公務員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

- 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
- 3.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
- 4.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
- 5. 제 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.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.
- 6.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

제8조 (근무실적평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·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 (복무등) ①지방전문직공무원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후 직무에 복귀하여 1년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. <개정 91·2·1, 91·6·27, 91·12·31>

③지방전문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 <91·2·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**제5조** 생략

부 칙 <91·6·27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**제9조** 생략

부 칙 <91·12·3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**제3조** 생략

(추 21)

제5편 내무 대전직할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

● 대전직할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

1988. 9. 30
[규칙 제1259호 전문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·채용계약의 연장·해지·근무실적 평가 및 보수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채용계약서) ①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 다만,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“비전임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”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,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3조 (채용승인 신청)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(이하 “채용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서 1부
2. 예산서 사본1부
3. 기타 자격 및 채용조건을 증빙할 관계서류(자격증사본·경력증명서등) 각 1부

제4조(채용구비서류) ①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“지방공무원 인사규칙”에 의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채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 (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) 채용기관의 장은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

제5편 내무 대전직할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

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채용계약의 해지) 지방전문직 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채용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 (근무실적 평가)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1년마다 정기평가하되, 계약의 연장, 봉급액의 조정,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한다.

② 근무실적평가자,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 채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·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수결정) ① 지방전문직공무원의 봉급지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“지방전문직 공무원채용자격기준”에서 정하는 자격기준별 채용구분(이하 “채용구분”이라 한다)가호내지 마호의 봉급액 범위안에서 담당업무의 난이도,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계약한 금액으로 하되, 1년이상 근속한 채용구분 나호내지 마호에 해당하는 지방전문직공무원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구분별 봉급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봉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전문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.

부 칙(규칙 제1259호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을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.

제3조 (채용중인 자에 대한 계약의 변경)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, 봉급지급액의 조정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계약은 해지하고 개정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

(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)

구 분	자 격 기 준
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·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. 연구·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연구·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5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.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·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. 연구·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.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구 분	자 격 기 준
다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연구·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2. 연구·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.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이상인 자로서 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6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연구·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. 연구·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자4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6.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마	위 "가" 내지 "라"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·기술·기능 및 경력이 있는자

비 고 : 위 표의 가의 제9호, 나의 제5호, 다의 제6호, 라의 제6호 및 마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.

學歷・資格・經歷 認定 基準(案)

交通關聯分野 學歷認定 範圍

○ 大學院

關 聯 學 科	專 攻 分 野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都市計劃 學科 - 産業工學科 - 環境計劃 學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交通工學 - 都市計劃學 - 交通關聯 論文發表者

○ 大學校

關 聯 學 科	專 攻 分 野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交通工學科 - 都市工學科 - 都市計劃學科 - 土木工學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交通工學 또는 都市工學 - 交通・道路 또는 交通關聯 論文 發表者

資格認定 範圍

○ 技術士

- ┌ 交通技術士
- ├ 都市計劃技術士
- └ 道路 및 空港 技術士

○ 技士

- ┌ 交通技士 1級
- ├ 都市計劃技士 1級
- ├ 土木技士 1級
- └ 土木技士 2級

□ 經歷認定 範圍

- 交通關聯(交通・道路) 國公立研究所에서 研究分野 從事者
- 交通關聯(交通・道路)會社에서 關聯分野 研究實務 從事者
- 交通・道路關聯 公務員으로 勤務
 - ※ 交通開發事業 : 交通・道路分野 研究・設計・土木 從事
 - 交通關聯分野 : 交通部, 市道交通觀光局, 警察廳 交通指導局 地方警察廳 交通課

※ 開發學科 設置

- 土 木 工 學 科 : 女子大學을 除外한 65%以上の 學科
- 產 業 工 學 科 : 江原大, 京畿大등 3個校
- 都 市 工 學 科 : 慶尙大, 光州大등 7個校
- 都 市 計 劃 學 科 : 서울市立大, 弘益大등 4個校
- 交 通 工 學 科 : 계명대등 3個校
- 都 市 計 劃 工 學 科 : 牧園大등 3個校
- 環 境 計 劃 學 科 : 서울대 環境大學院